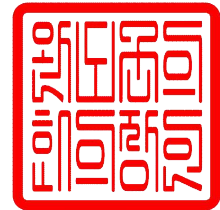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2. 발 의 자 : 조 영 식 의원

3. 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정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 2조)

- 책무(안 제3조)
- 재정지원(안 제4조)
- 위탁(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6조, 안 제7조)

5.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에 관한 기본법

6. 조례안예고기간 : 2025. 7. 4. ~ 2025. 7. 9.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 1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3,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 1팀(전화: 061-550-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영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행사·축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완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 나. 완도군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 라.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 ① 군수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3. 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2.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3.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

[본조신설 2024. 3. 19.]